

정 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영기업 재벌대기업, 또는 금융기업 등의 법의 한계를 벗어난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이 훼손됨을 방지하고, 공권력의 갑질을 유도하는 비민주적이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과 정책의 시민 스스로의 감시 및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시민들의 법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타운홀미팅 등 계몽활동을 통해, 힘없고 취약한 일반 시민들이 나라다운 나라에서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내역)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권력의 갑질이 자행되는 공공 분야 및 지역에서의 타운홀미팅 사업
2. 공권력의 횡포를 알려 재발 방지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개최
3. 공공정책시민감시를 위한 인터넷 신문 운영 사업
4.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현지중계방송 사업
5. 시민의 제도 개선 작업을 지원하는 청원아고라 운영사업
6. 기타 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목적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5개 이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단체의 필요상 각 지역의 지부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단체의 이름을 '지역명+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이라고 명명한다. (사례: 경기지부의 경우 경기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총회를 참여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이 단체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정기적(월별) 회비를 납부하거나, 비정기적으로 3회이상 소정의 일시금(특별후원회비)을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정기적 회원 회비의 규모나 일시금의 규모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단체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총재 1인과 부총재 2인,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임원 이외에 별도로 감사 2인을 둔다.
- ② 각 지부의 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 ① 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는 본 정관 제3장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주 목적과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① 총재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소집한다.
-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총재,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설립 초기 정회원의 수의 부족으로 총회가 성립되기 힘들 때는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총재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총재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운영위원 최소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제20조 (조직의 구성 및 임면)

-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단체운영 전문가와 지역 대표, 정책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5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 ①총무·기획위원
- ②회원관리위원
- ③재정위원
- ④기간산업정책위원
- ⑤사회복지정책위원
- ⑥세정·환경정책위원
- ⑦언론·재벌정책위원

⑧기타 환경변화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위원
제22조 (소집)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의와 임시 운영위원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총재가 소집한다.

제23조 (결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1.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지침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5. 정회원의 부족으로 총회가 성립되기 어려울 때 주요 단체의 결정사항

②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총재단이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운영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공식적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내거나 네이버 밴드에서 가입한 회원의 정기적(월별) 납입회비, 특별후원회비(일시금), 회원을 위해 실시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참여회비 등으로 구성된다.

제27조 (출자 및 용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필요가 인정된 다고 판단될 때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회계보고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발기인 대회가 열린 2016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4인이 이에 기명날인 하다.

2016년 12월 29일

발기인	총재	강세호	(인생략)
발기인		이정환	(인생략)
발기인		황 철	(인생략)
발기인		조남웅	(인생략)